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117
----------	-------

제출년월일 : 2019. 3.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2018. 12. 18.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 부부공동육아를 실현하기 위해 ‘배우자 산후조리 휴가’를 신설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또한,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중 20년 이상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 및 정비하고,
- 공무원의 가족 중 군입영이 확정된 사람이 있을 경우 군 입영일 행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가족 간 화목한 분위기 조성 및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아울러, 기타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어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표준안에 맞게 내용을 수정(삭제) · 신설
 -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복무에 관한 위임규정 근거를 조례에 반영(안 제1조)
 - 2)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 3) 출장공무원 규정 사항 삭제(안 제8조)
 - 4) 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정비(안 제13조의2, 별표4)
 - 특수경력직 외에 유사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아 임용된 경력직공무원도 연가일 수를 가산 할 수 있도록 함
 - 5) 연가보상비 지급 규정사항 반영(안 제14조제6항 신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지급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근거 규정 마련

6) 연가일수 공제를 개정된 복무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수정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7) 공가 사항 삭제(안 제17조)

8) 특별휴가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규정 사항 정비 반영(안 제18조)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5일→10일)(별표 3)
 - 육아시간 확대 <생후 1년 미만, 1일 1시간 → 만 5세 이하, 1일 2시간>
(안 제18조제5항)
 -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운영 사항 규정(안 제18조제14항)
 - 복무규정과 동일내용으로 규정된 조항 삭제 :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난임치료, 모성보호시간
- (안 제18조 제2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및 휴가사용법 정비(안 제18조제8항)

1)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일수 확대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기존 15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기존 15일)

2) 확대된 휴가일수 및 장기재직 휴가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분할 횟수 정비

- 기존) 4회 분할 사용 가능
- 변경) 1회 3일 이상 사용, 연2회까지 사용 가능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
잔여일수 사용 가능

3)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휴가일수 보장을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를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하는 단서조항 삭제

○ 군 입영일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15항 신설)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과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 입영일 특별휴가’
(입영당일 1일) 신설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배우자 산후조리 휴가’ 신설 (안 제18조제16항 신설)
 - 100일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에게 5일의 ‘배우자 산후조리 휴가’ 부여

- 기타 사항 정비

- 1)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근거규정 정비(안 제12조제2항)
 -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폐지에 따라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근거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으로 개정
- 2) 법률용어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6조제1항)
 -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용어에 맞게 ‘전염병’ 을 ‘감염병’ 으로 용어 정비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18.12.18.)전문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

- 입법예고 : 2019. 1. 29. ~ 2019. 2. 18.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3건(반영 1, 미반영2)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4
- 입법예고 결과보고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불임 1 >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 을 “시장” 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본문 중 “해직된” 을 “시장은 해직된” 으로, “시장은 15일을” 을 “15일을”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특수경력직공무원” 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로 하고 “미만의”를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을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으로, “공무수행상”을 “공무수행에”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를 “감염병에 걸려”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의 “여자”를 “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 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6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을 “영 제7조제1항” 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를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1회에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별 잔여 휴가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제18조제8항제2호 및 제3호 중 “15일” 을 각각 “20일” 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부터 16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장기재직휴가는 제8항 각 호의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⑪ 공무원은 자녀 및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당 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100일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은 5일의 배우자산후조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10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소 관 과		총 무 과
입 안 자	과장	총무과장
	직위 · 성명	박 부 옥
	팀장	총무팀장
	직위 · 성명	정 진 권
	담당자	문 영 진
	성명 · 전화	(행정 2112)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u>10</u>
유산 · 사산	배우자	3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1)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외의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2) 본인 결혼 및 배우자의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할 수 있다.(단,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불임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 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 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 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회복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 략) ② <u>소속기관의 장은</u> 전시, 사변 또는 천재 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 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 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u>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u>상사의 명을 받아 출</u> <u>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u> <u>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u> <u>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u> <u>소비하여서는 안된다.</u> ② <u>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안에 그</u> <u>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u> <u>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u> <u>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u> <u>다.</u> ③ <u>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u> <u>귀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u> <u>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u>	<삭 제>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u>해직된</u> 공무 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u>시장은 15일을</u> 한도로 계 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u>시장은 해직된</u> ----- ----- <u>15일을</u> -----.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② <u>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u> <u>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u> <u>한다.</u>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u> <u>령)-----</u>
제13조의2(<u>특수경력직공무원의</u> 연가가산)	제13조의2(<u>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u>

현 행	개 정 안
<p><u>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u></p> <p><u>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u></p> <p><u>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数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휴직자의 연가일수 = ----- x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③ · ④ (생략)</p> <p>제16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기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p>제17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병가) ① 시장-----</p> <p>-----</p> <p>-----</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감염병에 걸려 -----</p> <p>-----</p> <p>-----</p> <p>-----</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u></p> <p><u>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기관에 소환된 경우</u></p> <p><u>3. 법률에 따른 투표에 참가할 경우</u></p> <p><u>4. 승진 · 전직시험에 응시할 경우</u></p> <p><u>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및 시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u></p> <p><u>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u></p> <p><u>7.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한 경우</u></p> <p><u>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u></p> <p><u>9. 올림픽 ·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경우</u></p>	<p>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p> <p>제18조(특별휴가) ① ----- ----- 그 밖의 ----- -----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여성----- ----- -----.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p>

현 행	개 정 안
<p>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p>	<p>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 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 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
<p>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단서 신설></p>	<p>⑥ ----- ----- ----- 영 제7조제1항 ----- ----- ---.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p>
<p>⑦ (생 략)</p> <p>⑧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4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30년 이</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 ----- --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1회에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p>

현 행	개 정 안
<p><u>상 재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한다.</u></p>	<p><u>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별 잔여 휴가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u></p>
<p>1. (생 략)</p> <p>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u>15일</u></p> <p>3. 재직기간 30년 이상 : <u>15일</u></p> <p><u>⑨ 시장은 제8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세부운영계획을 규칙으로 정한다.</u></p> <p><u>⑩ (생 략)</u></p> <p><u>(1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u></p> <p>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 (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p> <p>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까지</p> <p>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까지</p> <p>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까지</p> <p>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p>	<p>1. (현행과 같음)</p> <p>2. ----- <u>20일</u></p> <p>3. ----- <u>20일</u></p> <p><u>⑨ 장기재직휴가는 제8항 각 호의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u></p> <p><u>⑩ (현행과 같음)</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u>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u>	
<p><u>(12)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수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u></p>	<p><삭 제></p>
<p><u>(13)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u></p>	<p><삭 제></p>
<p><신 설></p>	<p><u>(14)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u></p>
<p><신 설></p>	<p><u>(15) 공무원은 자녀 및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신 설></p>	<p><u>(16) 100일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은 5일의 배우자산후조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10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p> <p>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제1항 관련)</p>		<p>[별표 3]</p> <p>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대 상</th><th>일 수</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td>본인</td><td>5</td></tr> <tr> <td>자녀</td><td>1</td></tr> <tr> <td>출산</td><td>배우자</td><td>5</td></tr> <tr> <td rowspan="2">유산 · 사산</td><td>배우자</td><td>3</td></tr> <tr> <td>본인</td><td>20</td></tr> <tr> <td rowspan="7">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3</td></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3</td></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 </tbody> </table>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유산 · 사산	배우자	3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유산 · 사산	배우자	3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비고

- 1)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2) 본인 결혼 및 배우자의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할 수 있다.(단,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p> <p><u>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u></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p> </div>	<p>[별표 4]</p> <p><u>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u></p> <p><u>[제13조의2 관련]</u></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p> </div>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8-117호
----------	---------

제안년월일 : 2019. 4. 2.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조항 정비 및 일반적인 입법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 신설되는 입영휴가의 대상을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특별휴가의 확대를 제한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비밀엄수 조항 삭제 (안 제3조의2)
- 일반적인 입법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4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6항)
- 근거법령 인용을 통한 군입영일 특별휴가 명확화(입영휴가) 및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는 입영 대상자를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안 제18조제1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안 제14조제6항 중 “아니한” 을 “않은” 으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한다.

안 제18조제6항 단서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자녀 및 형제·자매” 를 “본인의 자녀” 하고,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
에는 입영당일 1일의 휴가” 를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영을 하는 경
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삭 제></p>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영 제7조제1항-----</u> ----- ----- ----- ----- ----- -----.</p>	<p>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8조(특별휴가) ① ----- -----그 밖의 ----- -----.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원안과 같음)
③ (생 략)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여성----- ----- -----.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한다.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u>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u>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p>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단서 신설>	<p>⑥ -----</p> <p>-----</p> <p>-----</p> <p>-----</p> <p>영 제7조제1항-----</p> <p>-----</p> <p>-----</p> <p>-----.</p> <p><u>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u></p>	<p>⑥ -----</p> <p>-----</p> <p>-----</p> <p>-----</p> <p>-----.</p> <p>-----.</p> <p>-----</p> <p>-----.</p> <p>-----.</p>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원안과 같음)
⑧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4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한다.	<p>⑧ -----</p> <p>-----</p> <p>-----재</p> <p><u>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u> 이 경우 휴가일수는 1회에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별 잔여 휴가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p>	(원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u>15일</u>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u>15일</u>	2. ----- ----- : <u>20일</u> 3. ----- : <u>20일</u>	
⑨ <u>시장은 제8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세부운영계획을 규칙으로 정한다.</u>	⑨ <u>장기재직휴가는 제8항 각 호의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u>	(원안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원안과 같음)
⑪ <u>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u>	<삭 제>	(원안과 같음)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u>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u> <u>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u> <u>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u></p> <p><u>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u> <u>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u> <u>부터 90일까지</u></p>		
<p><u>(12)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u> <u>등 불임치료 수술을 받은 공</u> <u>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u> <u>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u> <u>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u> <u>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u> <u>로 받을 수 있다.</u></p>	<p><u><삭 제></u></p>	<p>(원안과 같음)</p>
<p><u>(13)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u> <u>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u> <u>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u> <u>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u> <u>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u> <u>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u> <u>을 받을 수 있다.</u></p>	<p><u><삭 제></u></p>	<p>(원안과 같음)</p>
<p><u><신 설></u></p>	<p><u>(14)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u> <u>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u> <u>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u> <u>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u> <u>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u> <u>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u> <u>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u> <u>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u> <u>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u> <u>무를 명할 수 없다.</u></p>	<p>(원안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p><u>⑯ 공무원은 자녀 및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u>⑯ 공무원은 본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 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신 설>	<p><u>⑯ 100일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은 5일의 배우자 산후조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10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u></p>	(원안과 같음)